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of Specialized Law Librarian

홍명자(Myung Ja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목표 |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2. 교육의 역사 |
| II. 법률전문사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 법률분야 교육의 필요성 |
| 1. 법률전문사서의 의의 | 4. 교육의 형태와 교육내용 |
| 2. 법률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역할 | IV.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제언 |
| 3. 법률전문사서의 자격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법률도서관에서 전문적 봉사를 담당하는 법률전문사서의 의의와 필요성, 역할, 및 법률전문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개관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률전문사서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전공' 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주제어 : 법률전문사서, 법률도서관, 법률도서관학, 주제전문사서

Abstract

This study outlined the meaning, roles,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specialized law librarian; examined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in law librarianship and analyzed the situation of American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for the education of specialized law librarian; and recommended the special law librarianship program unde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Graduate School.

Key Words : Law Library, Law Librarianship, Law Librarian, Subject Specialist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mjhong@cuth.cataegu.ac.kr)

· 접수일 : 2001. 8. 16 · 최초심사일 : 2001. 9. 4 · 최종심사일 : 2001. 9. 6

I.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RUSA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는 그 봉사지침에서, 일반사서의 봉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 남용으로 인한 책임추궁을 받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분야로서 의학, 법률, 경영 분야를 예시하고, 능력의 범위를 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밝히고 있다.¹⁾ 법률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특수한 전문분야이므로 법률학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사서로서는 깊이 있게 전문적인 봉사를 하기 곤란하다.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봉사는 주로 법률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봉사를 담당하는 사서의 자격 즉 법률학과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직원의 확보는 봉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된다.²⁾ 그래서 법과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 법률분야와 도서관분야 관한 교육을 받아 법률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있는 사서를 채용하게 되었다.³⁾ 오늘날 법률정보의 전자화, 판례법 기타 일차정보원의 폭발적 증가, 법학분야의 학제적 연구, 법률실무 및 법학연구의 국제화 등의 현상에 의하여 법률분야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법률도서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사서들은 법률정보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서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법률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법학교육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1999년에 미국식 law school제도의 도입안을 건의한 바 있고, 이의 채택이 보류된 상태이긴 하나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미국의 법과 대학교육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사서에 의한 봉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위의 보고서에서도 법과대학 도서관의 설치 및 전문사서의 기용이 제안되었다. 한편, 현행 법학교육 제도 하에서도 교육여건의 하나로 법과대학 도서관 내지 법률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2000

-
- 1) RUSA, *Guidelines for Medical, Legal, and Business Responses at General Reference Desks*, prepared by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Committee, 1992 and revised in 2000, http://ala.org/rusa/stnd_general_ref_desk.html
 - 2) 홍명자, "효율적인 법률도서관 봉사를 위한 법률사서의 중요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 52집(1996), p. 182
 - 3) 홍명자,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2 호, p. 320.

년에 실시된 법과대학 (법학과)의 평가에서 이에 관한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었고, 따라서 평가에 대비하여 여러 대학에서 법률도서관 내지 자료실을 만들고 전담사서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전문사서의 배치에 대해 거론한 취지는 법학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서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기대한 것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봉사와 법률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법과대학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법률분야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각종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도서관통계에 수록된 도서관만도 15개 도서관에 이르고 있다⁴⁾.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 설치된 법률도서관이 그 소속기관과 구성원에게 적절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사서의 채용이 필요하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고 이에 관한 주장이 많은 문헌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들 중에 종래와는 달리 주제관 (divisional organization)의 조직형태를 채택하는 도서관이 나타나면서, 주제열람실 (인문과학 자료실, 사회과학 자료실, 자연과학 자료실 등)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사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하여 다른 논문들을 보면 대체로 부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활용하여 양성하거나, 학부과정에서 특정주제분야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대학원과정에 특정분야의 전공자를 유치하여 특성화된 주제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대동소이한 피상적 제언을 하는데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다. 다만 음악분야의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⁵⁾

현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중에서 특정 주제분야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뿐이다. 즉 학부과정에는 전공선택과목으로서 3학년에 '의학용어학', 4학년에 '의학도서관'과 '의학 및 과학 정보원' 등 3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석사와 박사과정에는 '보건정보론'과 '의학도서관 운영특강'이 개설되어 있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제분야에 관한 도서관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이처럼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법률도서관이 그 소속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전문적인 법

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0년국회도서관, 대검찰청, 대법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울산,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광주 고등법원, 법무부, 법무부연수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도서실)

5) 이 지원, 음악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7.

률정보봉사를 수행하여 적극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전문사서를 기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률도서관에 적합한 전문적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격과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사서를 배출하고, 또한 기존의 법률도서관계에 법률전문사서에 관한 전반적 개념을 부여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먼저, 법률전문사서에 관하여 그 의의와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한 후,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교육에 관한 설명은 법률전문사서제도가 일찍이 성립되어 오랜 세월동안 발전되어 온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함과 아울러 이론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양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1.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서관학·정보학계에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되고 있으나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특히 전문성이 중시되는 법률도서관 분야에서 심도 있게 법률정보봉사를 담당할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전문사서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우선 제 2장에서 법률전문사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밝힌 후, 그들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급변하는 법률환경에서 법률정보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각종 기준과 지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직의 양성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된 양상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법률도서관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즉 법률전문사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그 교육목표 및 교육의 역사, 법률전문사서에 대한 법률분야 교육의 필요성과 오늘날 교육의 형태와 그 내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에는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계속교육 등에 의한 비공식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 교육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미국에서 법률전문사서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

은 법과대학 (law school)과 도서관·정보학대학원(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 다양한 학교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법과대학’과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법과대학의 졸업 후에 취득하는 학위명은 JD (Juris Doctor), 도서관·정보학교의 졸업 후에 취득하는 학위명은 MLIS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는 각종 문헌을 통해서 입수하였고, 그밖에 법률도서관 관련 website 및 각 교육기관의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최신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연구자료로 삼았다.

II. 법률전문사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입수, 전달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법의 지배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따라서 누구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도서관분야를 주도하기 위하여 1906년에 설립된 미국법률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이하 AALL이라 칭함)는 법률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가능성이 민주사회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률환경에서 누구든지 필요한 법률정보에 공정하고 균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법률전문사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용자의 관심을 조장하며, 또한 이용자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사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⁶⁾

원래 AALL은 법률사서직의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일반사회 및 법률사회에서 법률도서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하며, 법률도서관직의 전문성을 촉진하고, 또한 법률정보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전문적 종사자들 간의 협력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다.⁷⁾ 그래서 법률전문사서가 주어진 사회적 사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6) *AALL Mission Statement*, http://www.aallnet.org/about/strategic_challenge.asp ;
AALL 2000-2005 Strategic Plan: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Realities, Changing Roles
http://www.aallnet.org/about/strategic_plan.asp ;
AALL Ethical principles, http://www.aallnet.org/about/policy_ethics.asp

7) *Bylaws of the AALL*, 제 2조

록 AALL은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⁸⁾ 이에 따라 AALL은 도서관·정보학관련 교육기관에서 법률도서관학에 관련 강좌의 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이들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도 하고 있다.⁹⁾

1. 법률전문사서의 의의

법률전문사서는 법률이라는 주제분야에 대한 전문사서이므로, 법률전문사서의 정의에 앞서 주제전문사서의 정의에 대해 먼저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ALA는 ‘주제전문사서’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subject specialist’를 사용하면서, 어떤 주제나 학문분야에 관하여 탁월한 지식을 지닌 도서관 직원으로서, 그 주제에 관한 도서관자료를 선택하고 평가할 책임과, 정보봉사 및 서지적 조직을 할 부가적 책임을 지는 도서관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이와는 달리 ‘subject libraria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¹¹⁾ 특정 주제분야에 관한 지식을 지닌 사서로서 그 주제분야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그 정의는 ‘subject specialist’의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용어사전에서는 ‘주제전문사서 (subject special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¹²⁾ 그 내용은ALA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 특기할 사항은 주제분야의 해석상 광의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와 협의 (특정한 세분야)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특정 주제로 한정한 위의 정의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전문사서란 대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의 주제열람실에서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룰 ‘subject generalist’¹³⁾ 또는 ‘주제사서’¹⁴⁾와는 다르다. 즉 주제전문사서가 특정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전문적 봉사를 하는 사서인데

8) *AALL Professional Development Policy and Structure*, Approved by the AALL Executive Board, July, 1996.

9) AALL Task Force to Enhance Law Librarianship Education, *AALL Spectrum*, 3. 5, Feb. 1999, p. 13.

10)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by Heartsill Young, ALA, 1983, p. 220

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ed. by John Feather and Paul Sturges, Routledge, 1997. p. 435.

12)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340.

13) A. L. McNeal, "Divisional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Library Lecture*, No. 12,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1961), p. 45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 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에서 재인용)

14)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도서관학논집』 제 29집(1998), pp. 281-284.

반하여, 후자는 포괄적인 주제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사서를 지칭한다. 따라서 주제전문사서의 경우 전문적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 주제에 관해 고급수준 (석사 이상)의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주제사서에게는 특정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관련 주제들에 대해 폭넓게 다를 수 있도록 광범한 지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법률도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law librarian'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주제에 관한 지식 배경과 JD를 보유한 사서만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널리 법률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 주제는 법률분야에 관한 배경과 도서관·정보학 배경을 모두 지니고서 법률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서의 양성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법률사서'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주제전문사서'와의 균형상 법률주제분야에 관한 주제전문사서라는 의미에서 '법률전문사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다양한 법률환경 하의 법률도서관에서 활동하므로, 법률분야와 도서관·정보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두 분야에 관한 학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소속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구성원인 법률정보의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법률도서관의 현실에서도 약 85%에 해당하는 사람이 MLIS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JD도 보유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하다.¹⁵⁾ JD 보유자에 대한 요구는 법률도서관 관종에 따라, 그리고 담당업무에 따라 다르다. 즉 법과대학 도서관에서는 다른 관종에 비해 크게 요구되지만, 법률회사 (law firm) 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특히 법과대학 도서관장의 경우에 반드시 JD와 MLIS의 보유가 그 자격조건으로 되어 있으며,¹⁶⁾ 참고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에게도 이중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JD를 보유한 사람이 사서로서 일하게 되면 그들은 법률가처럼 사고하도록 교육받았으므로 참고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법률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역할

전문도서관의 사서는 보유한 지식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정보전문가로서 활동한다. 즉 그들은 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

15) AALL, *Education for Career in Law Librarianship*,
<http://www.aallnet.org/committee/tfedu/education.html>

16)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of the ABA*, 제 603조, 및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Regulations of the AALS*, 제 8조의 2 .

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를 한다.¹⁷⁾ 전문도서관의 하나인 법률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사서 역시 법률정보에 관한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전문사서는 다음의 6가지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¹⁸⁾

- (1) 법률전문사서는 그들이 봉사하는 조직의 정책과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2) 법률전문사서는 위의 정책과 목적, 이용자, 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및 업무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중점을 두는 법적 문제와 초점 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 (3) 법률전문사서는 법률서지와 법률연구방법에 대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 (4) 법률전문사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기술 혹은 서지기술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 (5) 법률전문사서는 법률장서를 개발하고 조직화해야 할 기본적 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6) 법률전문사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전문기술을 개발하고, 법률도서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법률전문사서는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대중 및 법률전문직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 요구에 대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자격과 사서직으로서의 자격을 겸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잘 조화시켜 법률정보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하게 법률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봉사에 적합한 태도, 자질, 및 기술 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률전문사서는 주로 법률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그들은 일반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고봉사, 자료조직, 수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률도서관의 특성에 적합하게 일반도서관의 이론을 법률도서관 환경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고봉사를 담당하게 되면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분야의 용어와 법률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료조직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가 취급하는 자료를 적절하게 체계화하기 위하여 법률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수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법률조직과 구조, 그리고 법률출판의 방법과 특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장서관리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들이 취급하는 자료의 유형과 특성, 특히 보유판의 중요성과 그 용도 등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률분야

17) Special Library Association, *Special Librarians Putting Knowledge to Work*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what/index.cfm>

18) Morris L. Cohen, "Background to Law Library Education", *Law Library Journal*, 64(Feb.1971), pp. 1-4.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법률도서관의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¹⁹⁾

법치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률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전문사서는 지식관리자와 정보조정자로서, 그리고 숙련된 교육자와 자료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더욱 이 가상도서관 환경 하에서 그들은 법률정보전문가로서의 기술을 유지하고 개발하며, 마케팅 기타 관리분야에 박식한 사람이 되도록 요구된다.²⁰⁾ 오늘날 법률정보의 최종이용자들은 스스로 전자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근거로 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의 선택과 입수, 조직화, 및 이용을 위하여 법률분야의 정보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이용지도, 연구자들에 대한 자문 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²¹⁾ 특히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최종이용자 검색시스템으로 개발되었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법률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므로, 법률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법률전문사서는 그 조직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권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²²⁾

3. 법률전문사서의 자격

한글사전에서는 자격을 “어떠한 임무를 맡거나 일에 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²³⁾ SLA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이해력, 기술, 태도 등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사서는 부여된 정보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 자격 즉 전문영역의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된 조직 및 이용자집단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지녀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은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석사학위에 추가하여 학부수준 내지 대학원수준의 주제에 관한 학위과정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고 그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²⁴⁾

19) Robert L. Oakley, "Education for Law Librarianship: Avoiding the Trade School Mentalit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1, 3/4(1989), p. 156.

20) AALL 2000-2005 Strategic Plan: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Realities, Changing Roles.
http://www.aallnet.org/about/strategic_plan.asp

21) AALL, *Toward a Renaissance in Law Librarianship: Special Committee Report, 2000*

22) Roy M. Mersky & Gary R. Hartman, "Trends for the Future of Law Libraries", in *The Spirit of Law Librarianship*, compiled by Roy M. Mersky and Richard A. Leiter, Fred B. Rothman & Co., 1991, p. 98

23)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1972. p. 2389.

24) Special Library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May 1996,

법률도서관이 처음 성립되었던 초기에는 “최선의 법률전문사서란 도서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가이다.”라는 기본사상에서 법률가들이 많이 활동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법률전문사서의 자격조건을 규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⁵⁾ AALL은 법률전문사서가 보유해야 할 지식과 기술의 개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침, 직원의 선발과 업무평가를 할 때 그들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Professional Development Committee, Sub-committee on Credentialing이 주축이 되어 1997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률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자격으로서 31 종을 나열한 후 그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서가 2001년 3월에 발표되었다.²⁶⁾ 이 문서에서 자격이란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개인적 성품 등이라고 정의한 후, 법률전문사서가 보유해야 할 자격을 핵심적 자격 (core competencies)과 특수한 자격 (specialized competencies)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된 핵심적 자격이란 모든 법률전문사서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도서관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지식 이외에 법률전문사서로서 봉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즉 법률제도와 그 성립배경 및 법률전문직에 대한 지식 등을 말하고, 반면에 특수한 자격이란 특수한 실무 영역에 대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도서관 관리, 참고 및 이용자봉사, 정보기술, 장서보존과 관리,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단독사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도서관에서 일할 경우에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영역 중에서 한 영역에 관한 자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AALL는 이처럼 법률도서관에서 활동할 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격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서화하였을 뿐 아니라, ALA가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을 인가할 때 참고하도록 지침²⁷⁾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 나열된 자격은 법률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므로,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 법률전문사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거나 확대 개편할 경우에 참고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법률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학 일반에 관한 교육과 법률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린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크게 일반적 자격 (general competencies)을 위한 교육과 주제에 관한 자격 (subject competencies)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일반적 자격’이란 일반 도서관·정보학에서 취급되는 참고 및 연구봉사, 도서관 관리, 장서 관리, 자료조작과 분류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기본지식을 법률분야에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competency.cfm>

25) Penny A. Hazelton, "Law Libraries as Special Libraries: An Educational Model", *Library Trends*, 42, 2 (Fall 1993), p. 322.

26) AALL, *Competencies of Law Librarianship*, 2001.

27) AALL,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1988.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참고 및 연구봉사 영역에서는 법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인과 이용, 연구전략 및 연구방법에 관하여 이용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도서관 관리 영역에서는 법률도서관 직원 및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기술과, 도서관봉사의 측정과 평가, 그리고 도서관관리상 야기되는 기술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장서관리 영역에서는 법률도서관에 필요한 법률자료와 비 법률자료, 인쇄 형태의 자료와 전자형태의 자료를 확인하고, 적절한 장서정책을 수립하며, 장서의 효력과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관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직과 분류에서는 법률도서관에 적합한 자료조직 및 분류에 관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주제에 관한 자격'이란 법률전문사서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즉 법률제도와 법률전문가, 법률문헌의 기원과 발전 및 현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에서는 최소한 다음의 기본 분야에 관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1) 법률제도 (The Legal System),

법률전문사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법의 종류, 법령과 판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의 역사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전문직과 법률용어 (The Legal Profession and its Terminology)

법률전문사서는 법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전문직의 종류와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도서관학에 관련된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률전문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전문적 언어가 법률용어이므로, 법률전문사서들은 약어 및 인용제도 등을 포함하여 법학관련 용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3) 법률문헌 (Literature of the Law)

법률전문사서는 각종 법률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법률문헌에 관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률분야의 일차자료와 이차자료 및 검색도구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며, 법률문헌은 인쇄자료만이 아니라 전자매체 등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사서는 이들 자료의 이점 내지 제한점 등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4) 법과 윤리 (Law and Ethics)

법률정보의 이용과 배포는 법적 내지 윤리적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전문사서는 저작권, 정보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한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하는 행위 등 정보

의 접근과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전문직과 사서직의 법적 자격요건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이 밖에도, AALL의 회장인 Carol Billings는 법률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법률전문사서가 구비하여야 할 지식과 기술로서 8종을 권고하였다. 즉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교양, 법률제도 및 법률전문직에 관한 지식, 법률정보원과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지식 및 법률의 역사에 관한 지식, 도서관·정보학의 이론에 관한 지식, 각종 형태의 정보공급자에 관한 지식,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 소속기관의 활동과 미래에 관한 지식, 일반행정관리에 관한 지식 등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응통성있고 창조적인 태도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적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⁸⁾

III.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전문직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서, 이러한 전문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공식화된 교육과 훈련의 존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피교육자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제도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되고 있다.²⁹⁾ 전문직에 대한 교육은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전문분야에 관한 인식 능력을 개발하며,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즉 전문직 교육은 전문기술 보다는 전문적 업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이론과 기본원리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 (educated person)'은 이론적 바탕을 지니고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을 조사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훈련받은 사람 (trained person)'은 다만 '새로운 상황에서 현재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만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불과할 뿐이다.³¹⁾ 전문직으로서의 법률전

28) AALL, *Toward a Renaissance in Law Librarianship*, 2000.

29) Talcott Parsons, "Profess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Sills, N.Y.: Macmillan & Free, 1968, Vol. 12.

30) Marta L Dosa, *Trend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North America: Paper Prepared for the ET Worksho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ocumentation*, Hong Kong, Sept 6-9, 1982, p. 3, (노 옥순, p. 9에서 재인용).

31) Hambleton, 전재서, p. 37.

문사서 역시 MLIS 및 JD 프로그램에 의한 공식 교육에 의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적 바탕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각종 훈련과정을 통하여 실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도서관·정보학의 교육기관이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기본 지식, 능력, 및 태도 등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 인증기준이 1992년에 ALA에 의해 마련되었다.³²⁾ 이 기준의 제 2장 Curriculum에서,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 전문분야에서의 봉사와 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할 교과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일반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때 전문분야의 단체에 의해 개발된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률도서관학 분야의 전문직 단체인 AALL는 ALA가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정보학교를 인가할 때 참고하도록,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을 마련하였다.

1.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목표

전문직 교육기관은 전문직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할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 전문적 정보의 교환과 계속교육을 위한 중심지가 될 수 있다.³³⁾ 그러므로 공식 교육의 존재여부는 전문직의 사회적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직은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법률도서관이 양적으로 증가됨은 물론 그 규모 역시 점차 방대해지고, 또한 이용자는 보다 전문적이며 정교한 봉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전문사서들의 양성을 위한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이 점차 필요하게 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률전문사서에 대한 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 즉 법과대학이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 담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도서관·정보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⁴⁾. 법과대학은 법률자체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매체형태로 쏟

32) ALA,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92.

33) Morris L. Cohen, "Background to Law Library Education",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 (1962a), p. 190.

아져 나오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은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도서관학은 도서관·정보학의 세분화된 분야의 하나이지 법학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법률에 관한 지식은 법률도서관에서 사서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성있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다. 즉 법률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업무 내지 운영상의 차이점은 '주제분야'와 '이용 대상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기본원리와 기술은 동일하다.

Oakley는 법률도서관에서 활동할 전문직의 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정보학 교육은 다음의 목표를 지니고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 (1) 분석능력, 체계적 문제해결, 대안의 비판적 평가 등 높은 수준의 사고력 개발. 즉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사서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 (2) 실무 및 이론적 측면에서 도서관 기술을 이해하도록 개발한다.
- (3) 법률제도, 법률방법, 법률언어와 법에 관한 논제 등을 이해하도록 개발한다. 그리고 법률 문헌 및 법률문헌 보급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도 개발한다.
- (4) 학생들이 도서관실무에 관하여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하여 볼 때 법률전문사서의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도서관학에 관한 강좌, 기본적 법률에 관한 강좌,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특수 강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제도, 법률연구, 도서관분야의 연구를 함께 결합한 형태 즉 고도로 특수화된 법률분야의 훈련과 도서관 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이 법률전문사서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도서관·정보학대학원과 법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대학교는 이미 법률전문사서의 교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2. 교육의 역사

법률도서관 발전의 역사는 법률사서직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서는 법학교육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⁶⁾ 법률전문사서에 대한 교육은 1908년 Albany에 있던 New York State Library School에서 '고급 참고업무'의 부분으로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어서 1910년에는 동 대학에 독립강좌의 하나로서 법률도서관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1937년 Columbia 대학교 도서관학대학원에서는 당시 동 대학 법률도서관장이던

34) Hazelton, 전계서. p. 322.

35) Oakley, 전계서. p. 150.

36) Hazelton, 전계서. p. 320.

Miles O. Price에 의하여 법률도서관학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강좌는 대학원생이라면 특별한 교육배경이나 자격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강좌는 1961년 Price가 퇴직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많은 지도자급 전문가를 배출하였다.³⁷⁾

1934년의 AALL 연차회의에서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학의 도서관장이던 Arthur S. Beardsley는 법률전문사서를 위한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Beardsley는 법률사서가 법학과 도서관학 두 분야에 관해 훈련받는 것이 “이상적 목표”라고 밝혔다.³⁸⁾ 1939년에는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ibrarianship이 Bachelor of Arts Degree in Law Librarianship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동 대학교 법과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개설되었고 따라서 입학조건으로 JD의 보유가 요구되었다. 당시 교과목으로는 고급 법률서지, 법률도서관자료의 선택과 정리, 법률참고 및 연구, 법률도서관 운영 등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1952년 12월에는 그 이수자에게 Master of Law Librarianship이 부여되었다.³⁹⁾ 그 후 1978년에 Master of Law Librarianship이라는 독립된 학위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Master of Librarianship에 통합시켜 세부 전문영역으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률도서관학 과정의 독특성, 법률전문사서들에 의한 명성, 양 과정의 입학조건과 졸업조건의 상이성을 이유로 하여 별도의 독립된 학위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법과대학과 도서관학대학원이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⁴⁰⁾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 대학교의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이 정보학대학원 (Information School)으로 바뀌면서, 법률도서관학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치시키되 학위명이 Master of Information Science with a Special Certificate in Law Librarianship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1961년 AALL의 Committee on Education은 초창기 법률도서관학 교육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던 Columbia University 도서관학대학원에게 법률도서관학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제안된 교과과정은 도서관학대학원에서 7개 강좌,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6강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 강좌들을 모두 이수하면 Master of Science, with specialization in law librarianship을 부여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⁴¹⁾

37) Cohen (1962a), 전계서, p. 193-197.

38) Laura M. Goldsmith,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Librarianship Program", in *Law Librarianship: Historical Perspectives* (ed. by L. N. Gasaway and M. G. Chiorazzi), Fred B. Rothman & Co., 1996, p. 556.

39) 상계서, pp. 567-570.

40) 상계서, pp. 578-580.

41) Morris L. Cohen, "A Suggested Master's Program in Law Librarianship for Columbia University",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b), pp. 225-228.

오늘날에는 법률도서관학 교육은 Joint-degree의 형태로 여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Fellowship in Law Librarianship^o University of North Texas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 3장 4절에서 상술하겠다.

3. 법률분야 교육의 필요성

법률전문사서가 되기 위하여 JD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즉 전문적 주제분야에 관한 교육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일반적 교육이 모두 법률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교육배경인가에 관한 이견이 있다. Hambleton은 법률처럼 급변하는 분야에서 직무훈련 등의 비공식적 훈련에 의해 법률주제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법률분야의 학위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반면에,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 '법률참고에 관한 강좌'를 수강하였다면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법률정보원의 활용 및 법학연구에 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의 교육을 더욱 중시하는 주장도 있다.⁴³⁾ 역사적으로 볼 때 법률도서관 종사자를 위한 기본적 자격으로서 초기에는 법학교육을 강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법과대학 혹은 법원 등에 속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학의 학위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법률학위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⁴⁴⁾

그러므로 이상적인 법률전문사서란 사서로서의 자격과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법률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전문적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JD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법률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법과대학에서는 법률전문사서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JD를 보유할 필요는 없고 그 대안으로서 Master of Legal Studies를 권고하는 주장도 있다. 이는 법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실무자로서 진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과대학에 개설된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JD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시간적 면과 경제적 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법률사서직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자격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되고 있다.⁴⁵⁾

42) Hambleton, 전개서. p. 42.

43) Mary B. Jensen, "The Debate over Degrees and Professionalism in the U. S.", *The Law Librarian*, Vol. 29, No. 1(March 1998), p. 16.

44) Hazelton, 전개서. p. 325.

이처럼 법률전문사서를 위한 법률분야의 교육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JD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률사서직이 학술직에 해당되고, 이들의 적극적 지원활동이 없다면 법과대학의 교육 및 법률가들의 법률실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University of Nebraska College of Law에 이러한 MLS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다른 주제분야와 협동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서관·정보학 분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JD를 보유한 사람 중에 법률실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안적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안적 직업으로서 법률사서직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직업이므로, 법률정보전문가로서의 특별한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치하여 법률사서직으로의 진출을 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JD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 개설된 법률도서관학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고, 또한 능력있는 학생들이 법률도서관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RA 혹은 TA를 모집하거나 혹은 법률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AALL에서 도 법과대학 졸업자로서 도서관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도서관학위를 지니고서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등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4. 교육의 형태와 교육내용

법률전문사서가 법률도서관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이외에 법률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서 AALL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사서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법률용어 및 인용제도에 관한 지식, 법률문헌에 관한 지식, 법률전문직 및 사서직의 윤리 등에 관한 지식을 기본 자격으로써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법률정보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는 도서관·정보학교에서 법률전문사서의 자격을 갖춘 교수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육은 대부분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전문사서가 시간강사로서 참여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전임 교수는 오직 5-6명에 불과한 설정이다⁴⁷⁾. 이들은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육담당자로서의 공

45) Hambleton, 전계서, p. 43.

46) J. M. Jacobstein, "The Role of the Law Schools in the Education of Law Librarians",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209-212.

47) AALL, Conference of Law Library Educators
(<http://www.courses.unt.edu/chandler/conferencelawlib/aallconeducators.htm>)

동관심사를 토론하기 위해 “Conference of Law Library Educator”을 1989년 조직하여 매해 모임을 갖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강좌명

일반적으로 법률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서 법학연구, 법률서지, 법률자료조직, 법률도서관의 운영, 법률정보시스템 등이 예시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도서관·정보학교에서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과목으로서 개설되고 있는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 현재 개설된 강좌명과 그 명칭으로 개설된 강좌의 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정보원과 봉사 (12개), 법률도서관학 (10개), 법률도서관 운영 (6개), 법률서지 (5개), 법학연구 (5개), 법률정보학 (3개), 사이버 법과 정책 (3개), 법과 윤리문제 (2개),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봉사 (1개),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1개), 법률도서관 자료의 선택과 정리 (1개) 등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법률정보원과 봉사, 법률도서관학, 법률도서관운영, 법률서지, 법학연구 등의 강좌가 비교적 많이 개설되어 있다.

(2) 강좌의 수

미국의 도서관·정보학교에서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학교의 수는 33개 대학이다. 그 중에서 1개 강좌만을 개설한 학교는 24개⁴⁸⁾, 2개 강좌의 개설학교는 5개,⁴⁹⁾ 3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3개교이며,⁵⁰⁾ University of Washington은 무려 6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서 SUNY at Buffalo는 Joint-degree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는 전혀 개설하지 않고 있다.

(3) 교육형태

법률사서직의 양성을 위하여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8) Univ. of Arizona, San Jose State Univ., Univ. of South Florida, Clark Atlanta Univ.,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ndiana Univ., Univ. of Iowa, Emporia State Univ., Univ. of Kentucky, Louisiana State Univ., Simmons College, Univ. of Michigan, Wayne State Univ., Rutgers Univ., Long Island Univ., CUNY at Queens, Syracuse Univ., SUNY at Albany, North Carolina Central Univ.,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rexel Univ., Univ. of Pittsburgh, Univ. of Rhode Island, Univ. of Wisconsin-Madison

49) UCLA, Univ. of Missouri-Columbia, Univ. of North Texas, Univ. of Texas at Austin, Univ. of Wisconsin-Milwaukee

50)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Dominican University, Pratt Institute

a.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 개설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를 1~3 강좌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게 함으로써 법률전문사서로서의 기본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와 같이 법률도서관학에 관련된 강좌만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25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강좌는 일반사서로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 법률사서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로서, 개설된 강좌를 모두 이수하고 또한 법률도서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면 법률도서관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b. Joint-Degree 프로그램

법과대학과 도서관·정보학대학원 등 두개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1980년 이후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 전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서관·정보학과 주제분야학문을 동시에 이수하는 Joint degree (Double degree, Dual degree) 프로그램이 그 방안으로 나타나고, 대표적 주제분야의 하나로 법학분야가 예시되었다.⁵¹⁾ 두 개의 대학원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아 두 분야의 전문적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두 개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두 개의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설된 대학으로는 7개 대학이 있다.⁵²⁾ 대학에 따라 MLS-JD, MS-JD, MSI-JD, MA-JD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이수과목, 취득학점, 교육연한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학위의 취득을 위하여, 먼저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 과목과 법률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며, 이수학점으로서는 27학점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48학점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는 이중학위의 취득을 신청한 학생이라도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하므로 80~90 학점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대학원에서, 두 분야의 전문적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통상 4년 정도의 장기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수하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이수할 때 보다 취득해야 할 학점의 수 및 등록금 액수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c.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

법률도서관 중에는 특히 JD와 MLIS 이중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51) Samuel Rothstein, "The making of a reference librarian", *Library Trends*, 31(Winter, 1983), pp. 386.

52)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Indiana Univ., Univ. of Iowa, Pratt Institute, North Carolina Central Univ., SUNY at Buffalo, Univ. of Michigan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JD를 보유한 사람을 도서관·정보학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 법률전문사서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프로그램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1939년이래 법률도서관학의 공식적 교육과 학문적 연구에서 오랫동안 중심적 역할을 해온 University of Washington이고, 다른 하나는 University of North Texas이다.

먼저, University of Washington은 Information School에 법률도서관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도서관·정보학 일반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법률도서관 환경에서 법률정보전문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미 법률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JD를 보유한 법률가로서 법률사서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그 입학자격으로 하여 Information School에 입학하도록 한 후 12개월간 4 quarter 동안에 총 45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핵심 교과목 26학점 과53)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과목 15학점54))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또한 졸업하기 전에 모든 학생은 Directed Fieldwork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관련 도서관에서 3주간 동안 full-time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실습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익히고, 그 분야의 전문직과의 접촉을 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 이와 같은 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ith Special Certificate in Law Librarianship을 취득하게 된다.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과목들은 물론 법률도서관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 당국은 그 외의 학생이라도 법률도서관에 취업할 의향을 가진 학생이라면 적어도 Legal Research I, II을 수강하고 법률도서관에서 실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음,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도서관·정보학대학원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Jamail Center for Legal Research-Tarion Law Library와 제휴하여 법률도서관과 법률정보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률도서관이나 법률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정보조직 및 정보생산기관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일반도서관의 관리에 관한 교과목 이외에 법률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교과목55)을 36시간 수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JD 보유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Fellowship

53) The Information Life Cycle,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s, and Collection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Information Systems, Architectures, and Retrieval, Information in Social Context, Instructional and Training strategie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 등 7개 과목
(<http://www.ischool.washington.edu/mlis/law.htm>)

54) Legal Research I, Legal Research II, Selection and Processing of Law Library Materials, Law Library Administration, Current Issues in Law Librarianship 5개 과목
(<http://www.ischool.washington.edu/mlis/law.htm>)

55) Law Librarianship and Legal Informatics,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Legal Information Access and Services, advanced Legal Information and Legal Informatics, Practicum and field Study

in Law Librarianship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ABA의 인가를 받은 법과대학에서 JD를 받은 사람으로써 도서관·정보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법률사서직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도서관·정보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Tarton Law Library에서 일주일에 31시간 반드시 훈련을 받도록 하여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실무경험을 익히게 한다. 이들은 대학원과정을 하는 동안 등록금이 면제되고 연간 15000불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법과대학 도서관 등에의 취업이 보장되는 등의 특혜를 받는다.

법률전문사서가 되기 위한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법률분야에 관한 교육을 먼저 받은 후에 법률사서직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 법률분야와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교육을 동시에 받는 경우,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교육을 먼저 받은 후에 법률분야의 교육을 받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Stern은 법률분야의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도서관·정보학교에 개설되는 도서관행정, 일반서지, 분류와 편목, 실습과목을, 그리고 법과대학에서 개설되는 법제사, 법률서지, 비교법과 외국법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Master's degree in law librarianship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반면에 도서관학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법과대학에서 개설되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법률서지, 법률용어등의 과목을, 그리고 도서관·정보학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분류와 편목, 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이 과정의 이수 후에는 Certificate in Law Librarianship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⁵⁶⁾

IV.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제언

모든 도서관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지닌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봉사주체로서의 직원이 도서관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일반도서관의 경우에 물론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특정 주제분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도 있는 정보봉사를 수행하여야 할 사명을

56) William B. Stern, "A Proposed Program for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3 (1962), pp. 235-236.

지난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전문도서관에서 특정 주제분야에 관한 전문적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사서가 곧 주제전문사서이다.

우리나라에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서 주제전문사서로 활동하는 사서가 별로 없고, 또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방안으로서 학부과정에서의 복수전공, 부전공, 특정주제분야에 관한 교과목 개설에 의한 특성화 등이 제안되고, 또한 대학원과정에서 특정 주제분야 전공자를 유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거나 Joint-Degree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고 있다. 물론 현재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주제열람실 (예; 사회과학자료실 등)에서 필요한 봉사는 학부과정의 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전문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법률도서관에는 법률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사서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분야와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이를 법률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법률도서관학이 일찍이 성립되어 많은 발전을 하여 온 미국에서는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도서관·정보학, 법률학,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사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학 대학원과 법과대학이 단독 혹은 협동으로, 그리고 JD 보유자를 대상으로 혹은 법률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도서관학 강좌나 일반도서관 관리에 관련된 강좌를 이수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도서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특별한 학위 내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가 8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막대한 숫자의 법률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법률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사서라는 전문적으로서의 진출이 법률전공자의 진로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법률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토양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고학력시대에서 대학원진학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에서 이들을 유치하여 법률전문사서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을 유치하여 단순히 현행 대학원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면, 일반도서관학에 관한 교육만을 받을 뿐 그들의 법률학에 관한 지식을 법률도서관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세부전공으로 '법률도서관학 전공'을 별도로 설치하여 법률전문사서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부과정에서의 복수전공, 부전공, 특수주제에 관한 강좌 개설 등으로

는 법률전문사서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또한 법과대학과의 Joint-degree 프로그램에 의해 법률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 '법률도서관학 전공' 과정에 법과대학 졸업자가 입학한다면 일반도서관학에 관한 강좌와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를 이수하게 하고,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졸업자가 입학하면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와 기본 법률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기본 법률과목에 대해서 법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든지 또는 법과대학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게 할 수도 있다.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로는 법률분야와 도서관·정보학 분야를 접목시켜 법률도서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정보원과 법률정보봉사, 법률도서관학, 법률서지, 법률도서관운영 등의 강좌들이 법률전문사서로서의 교육에 필요한 강좌라고 하겠다. 그리고 법률 비전공자를 위한 법률과목으로는 법률제도, 법률전문직과 법률용어, 법률문현, 법과 윤리 등이 법률전문사서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서 법률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은 물론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획득하게 되지만, 그러나 법률도서관학을 전공하여 법률전문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학위증에 혹은 별도의 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률도서관학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내실있는 전문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법률전문사서의 도입이 주장되는데 불과한 현시점에서 적임자의 발견이 쉽지 않을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비교적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 먼저 시도한 후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률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법률도서관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각종 기준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법률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AALL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도서관학 교육을 제도화하여 법률도서관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AALL과 같은 법률사서직으로 구성된 전문적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률도서관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유치하여 자격 있는 법률전문사서로 양성하여 법률도서관에 배출하며, 회원들의 재교육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률사서직의 사회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노옥순.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박사 학위논문, 1984.
-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이용재.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방안”, 《도서관논집》 제 29집. pp. 273-311.
- 이지원. 음악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논문, 1997.
- 한상완.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76.
- 홍명자. “효율적인 법률도서관 봉사를 위한 법률사서의 중요성”, 《대구효성기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 52집(1996). pp. 181-205.
- 홍명자.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2호. pp.303-332.
- AALL. *Competencies of Law Librarianship*. 2001
- AALL. "Core Competencies: What Law Librarians Do", *AALL Spectrum*, 2.7(April,1998), p. 18.
- AALL. "Credentialing survey confirms law librarian competencies and training needs", *AALL Spectrum*, 2. 7(April 1998), p. 17, 20.
- AALL. *Education for Career in Law Librarianship* by the AALL Task Force to Enhance Law Librarianship Education
<http://www.aallnet.org/committee/tfeedu/education.html>
- AALL. *Ethical Principles* (Approved by the AALL membership, April 5, 1999)
-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November 1988)
- AALL. *Law Librarian Core Competencies and Their Place in AALL/PDC Program Development*
- AALL. *Mission Statement: The Strategic Challenge 1998-2000*
http://www.aallnet.org/about/strategic_challenge.asp
- AALL. *2000-2005 Strategic Plan: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Realities, Changing Roles*. http://www.aallnet.org/about/strategic_plan.asp
- AALL. *Professional Development Policy and Structure*, July, 1996

- AALL. "Task Force to enhance Law Librarianship Education", *AALL Spectrum*, 3. 5(Feb. 1999), p. 13
- AALL. "Toward a Renaissance in Law Librarianship", *Special Committee Report, AAL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Law for the Non-JD*, <http://www.aallnet.org/prodev/w-1.asp>
- ALA.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 1999, <http://www.ala.org/hrdr/lepu.html>
- ALA.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92
- Badertscher, D. "Standards for Law Libraries and Law Library Service", *Bookmark*, 48 (Summer, 1990), p. 283
- Cohen, Morris L. "Background to Law Library Education",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10-199.
- Cohen, Morris L. "Epilogue to Educating Law Librarians: Ubi Fuiimus-Quo vadimus", *Law Library Journal*, 53. 3, 1962, pp. 238-240
- Cohen, Morris L. "A suggested Master's Program in Law Librarianship for Columbia University",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225-228.
- Cohen, Morris L. "Toward a Philosophy of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 64(Feb. 1971), pp. 1-4.
- Downs, Robert B. "Education and the Recruitment of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204-208.
- Gasaway, Laura N. and Margeson, S. "Continuing Education for Law Librarianship", in *The Spirit of Law Librarianship*, compiled by Roy M. Mersky and Richard A. Leiter. Fred B. Rothman & Co., 1991. pp. 1-14
- Goldsmith, Laura M.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Librarianship Program", in *Law Librarianship: Historical Perspectives* (ed. by L. N. Gasaway and M. G. Chiorazzi). Fred B. Rothman & Co., 1996. pp. 555-595.
- Hambleton, J., "Does a law librarian need a law degree?", in *The Spirit of Law Librarianship*, compiled by Roy M. Mersky and Richard A. Leiter. Fred B. Rothman & Co., 1991. pp. 37-41.
- Hazelton, Penny A. "Law Libraries as Special Libraries: An Educational Model", *Library Trends*, Vol. 42, No. 2(Fall 1993). pp. 319-341.
- Jacobstein, J. M. "The Role of the Law Schools in the Education of Law Librarians",

-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209-212.
- Jensen, Mary B. "The Debate over Degrees and Professionalism in the U. S.", *The Law Librarian*, Vol. 29, No. 1(March 1998). pp. 14-17.
- Lehr, Marcia G. *Education for Law Librarianship: the Three degree Standard for Law Librarianship*. University of Chicago (Master of Arts), 1982, March.
- Lester, J. "The ALA Accreditation Proces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eparation for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 81, No. 3(Summer 1989). pp. 511-22
- McNeill, J. "Perspectives: A Members' Forum", *AALL Spectrum*, (March 2001). pp. 6-8.
- Mersky, Roy M. & Hartman, Gary R. "Trends for the future of law Libraries" in *The Spirit of Law Librarianship*, compiled by Roy M. Mersky and Richard A. Leiter. Fred B. Rothman & co., 1991. pp. 97-109.
- Oakley, Robert L. "Education for Law Librarianship: Avoiding the Trade School Mentalit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1, No. 3/4(1989). pp.147-164.
- Parsons, T. "Profess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Sills. N.Y.: Macmillan & Free, 1968. Vol. 12)
- Rothstein, S. "The making of a reference librarian", *Library Trends*, 31(Winter, 1983). pp. 375-399.
- RUSA *Guidelines for Medical, Legal, and Business Responses at General Reference Desks*, prepared by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Committee, reference and User Services Association, 1992 and revised in 2000
http://ala.org/rusa/stnd_general_ref_desk.html
- Stern, William B. "A Proposed Program for Law Libra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 53, No. 3(1962). pp. 229-237.
- Special Library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1996.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 competency.cfm>
- Special Library Association. *Special Librarians Putting Knowledge to Work*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what/index.cfm>)